

2. 2024 PEG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피이지시스템

2024. 12. 16

Ver 1.1

< PEG 연말정산 – 사용자매뉴얼 목차>

1. 연말정산 작업개요	3
1.1 연말정산 작업 Flow	3
1.2 마법사 화면 구성	4
1.3 사용자 화면 구성	5
1.4 사용자 화면 목록	7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PDF 다운로드)	8
2. 마법사 화면	9
2.1 급여확인 및 안내	9
2.2 국세청 파일 등록	11
2.3 부양가족 등록	12
2.4 추가공제 확인	15
2.5 국세청 파일 반영	16
2.6 공제정보 수기등록	17
2.7 결과확인	17
3. 사용자 화면	18
3.1 기초정보(입력)	18
3.2 국세청파일 업로드/부양가족등록/국세청파일반영 (마법사화면과 동일)	18
3.3 공제정보 등록	19
3.4 공제정보 확인 및 제출	25
3.5 소득공제신고서 등 출력(연말정산 제출서류)	29
3.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0

1. 연말정산 작업개요

1.1 연말정산 작업 Flow

연말정산 관리자와 사용자 각각의 작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자의 사전작업을 거쳐서 근로자들이(또는 관리자가 대행) 본인 자료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
관리자가 취합하여 산출작업을 한 뒤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1.2 마법사 화면 구성

사용자가 단계별로 진행하면 연말정산 입력이 완료되는 마법사 기능입니다.

최초에 로그인 후 마법사를 먼저 수행한 후 사용자 화면에서 후속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분	총급여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납부 소득세	기납부 지방소득세	
주(현)근무지	87,000,000	3,500,000	3,300,000	650,000	9,600,000	960,000	상세
종(전)근무지합계	5,400,000	480,000	350,000	89,000	162,000	16,200	상세
합계	92,400,000	3,980,000	3,650,000	739,000	9,762,000	976,200	

[마법사 단계]

급여확인 및 안내	등록된 현(주)근무지의 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현 근무지 외)의 소득정보가 있으면 등록한다.
국세청 파일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 받은 PDF 파일을 등록한다.
부양가족 등록	전년도 정보와 국세청 PDF 정보를 기반으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한다.
공제정보 수기 등록	국세청 자료 외 기타 공제정보를 수기로 등록한다.
결과확인	등록된 내용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한다.

등록된 급여자료로 계산했을 때 예상세액이 없는 경우는 다른 등록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단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부양가족 및 공제항목의 추가적인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부금(법정, 지정)이 있는 경우 등록하여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합니다.**
 기부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1. 기부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마법사 완료

2. 수기자료 기부금이 있습니다.
수기자료 기부금을 등록합니다.

수기자료 등록 바로가기

3. 국세청PDF 기부금이 있습니다.
국세청PDF 자료를 등록합니다.

국세청PDF 등록 바로가기

[단계의 이동]

< 이전	이전 단계 화면으로 이동한다.
다음 >	현재 화면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단계 화면으로 이동한다.
직접이동	급여확인 및 안내 > 국세청 파일 등록 > 부양가족 등록 > 공제정보 수기 등록 > 결과확인 한번 작업한 이후에는 상단의 메뉴를 직접 클릭하여 원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1.3 사용자 화면 구성

1) 화면설명

마법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마법사화면보다 상세하게 확인/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④메뉴숨김

①기본년도 : 2024년 ▼ 관리자공저 0/0 □ 변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확인' 메뉴로 이동시 자동계산됩니다.

②사용자정보 ⑧도움말

사용자: 고길동(A0001) ?

⑥작업메뉴

⑦작업영역

⑨연말정산 마법사

③주메뉴

입력

확인

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다운로드

2024년도 국세청PDF안내

⑩사용자 교육 동영상

v. 2024. 6. 0

기초정보

이름 고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영문명 영문주소 연락처

세대주여부 세대주 지역건강보험번호 지역국민연금번호

국세청 신고정보

거주자 구분 거주자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국적코드 한국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부

소득정보

구분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보험납입액 기납부세액

주(현) 113-81-98060 주(주)피이지시스템 2024.01.01 2024.12.31 87,000,000 1,200,000 7,450,000 10,560,000 상세

종(전) 113-81-98060 (주)마이크로 2024.01.01 2024.02.29 5,400,000 0 919,000 178,200 수정 삭제

주(현)근무지(주)피이지시스템 상세정보 주(현)근무지 정보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근무기간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감면기간 - - -

과세급여 급여총액 87,000,000

비과세급여 비과세소득 1,200,000

보험납입액 국민연금 3,500,000 건강보험 3,300,000 고용보험 650,000

기납부세액 기납부 소득세 9,600,000 기납부 지방소득세 960,000

[주메뉴의 '입력' 이 선택된 화면]

- ① 정산년도 : 해당 귀속년도인 2024 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② 사용자 정보 : 로그인한 본인의 사번과 성명입니다.
- ③ 주메뉴 : 주메뉴를 선택하면 주메뉴의 작업메뉴와 작업영역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구분	상태표시	설명
입력	입력진행중	사용자가 확인완료하기 전 상태
	입력완료	사용자가 확인완료 함. 입력화면 입력불가
확인	표시없음	사용자의 확인완료 전
	확인완료	사용자가 확인완료 함. 입력메뉴는 입력완료로 변경되며 입력화면 입력불가 관리자가 접수하기 전에는 확인완료를 취소하여 다시 입력가능
	접수	관리자가 관리자메뉴에서 접수하여 사용자의 확인완료취소 불가
공제 신고서	확인 후 출력가능	사용자가 확인완료하기 전으로 조회 불가
	출력가능	사용자가 확인완료 했고 관리자가 접수하기 전으로 출력가능
	조회만 가능	관리자가 관리자메뉴에서 접수하여 출력은 불가. 조회는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가능기간아님	관리자가 설정한 출력가능기간이 아니라 조회/출력 불가
	정산완료 후 출력가능	관리자의 정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조회/출력 불가
	출력가능	사용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출력 가능

- ④ 메뉴숨김 : 클릭하면 메뉴를 숨길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은 경우 사용합니다.

- ⑤ 관리자공지 : 관리자가 공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작업메뉴 : 주 메뉴의 보조메뉴로 실제 작업할 화면을 선택합니다.
- ⑦ 작업영역 : 작업메뉴에서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 ⑧ 도움말 : 각 화면별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과 같은 내용입니다.
- ⑨ 연말정산 마법사 : 마법사 화면이 종료된 후에도 마법사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된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⑩ 매뉴얼다운로드 : 사용자매뉴얼을 PDF 파일로 본인 PC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업과정 :

입력화면에서 입력을 마치고 난 후 왼쪽 주메뉴 확인화면에서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완료** 클릭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사업장 방침에 따라 출력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확인완료 취소** 한 후에 등록정보를 수정한 후에 다시 제출합니다.

관리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처리를 한 후에는 확인완료 취소가 되지 않고 공제신고서도 조회만 가능합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정산작업이 완료되고 정해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기간이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마법사

입력

확인

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다운로드

2024년도 국세청PDF 안내

사용자 교육 동영상

v. 2024. 0. 0

기준년도 : 2024년

관리자공지 0/0

변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확인' 메뉴로 이동시 자동계산됩니다.

사용자 : 고길동(A0001)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계산결과 Summary

고길동님의 총급여액은 92,400,000 원이고 기납부세액은 10,738,200 원입니다. **추정액** 결정세액은 7,962,604 원이고 총 환급 금액은 -2,775,690 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금종류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합
소득세	7,238,640	9,762,000	-2,523,360	
지방소득세(소득세 10%)	723,864	976,200	-252,330	-2,775,690

※ 국세청 모의계산과 비교시, 환단위 절사로 인한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산

소득공제Summary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합	그밖의 소득공제 합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92,400,000	14,370,000	14,869,000	2,000,000	61,161,000	8,918,640

세액공제계산내역

구분	항목명	신청인원 (건수)	신청금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비고
세액공제(그 외)	근로소득세액공제		0	0	500,000	
추가공제	출산임양	1	700,000	0	700,000	
특별세액공제	보장장보필료		1,000,000	1,000,000	120,000	
	의료비		500,000	0	0	총급여3%이하
	기부금(특례, 우회, 일반)		2,400,000	2,400,000	360,000	
특별세액공제계	특별세액공제계		0	0	480,000	
세액공제계	세액공제계		0	0	1,680,000	
결정세액	결정세액		0	0	7,238,640	
산출세액	세액감면 합		0	1,680,000	7,238,640	

1.4 사용자 화면 목록

No.	메뉴명	탭명	프로그램 설명
1	입력	기초정보	기초정보(세대주여부, 주소,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등록), 소득정보(현 근무처 및 종전근무지 급여 정보 확인 등록)
2		국세청파일업로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공제자료(PDF)를 업로드
3		부양가족등록	부양가족 등록 및 정보수정
4		국세청파일반영	업로드한 자료를 부양가족에 맞게 공제자료로 선택, 반영
5		보험료	보험료 등록 수정
6		의료비	의료비 등록 수정
7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록 수정
8		기부금	기부금, 이월기부금 등록 수정
9		주택자금	주택자금 설문 및 등록 수정
10		연금/기타	기타 공제 등록 수정
11	확인/제출	계산내역확인	계산내역 확인 후 제출
12		공제내역확인	전체 공제 내역 조회 후 제출
13		제출서류첨부	첨부서류 확인 및 업로드(서류 온라인제출 선택시)
14	공제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각종소득공제 명세서
15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관리자의 산출완료 이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PDF 다운로드)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인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 년 간소화서비스 정식 오픈 전 작성된 것으로 일부 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x 합니다.
- 2)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인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스크롤합니다.



- 3) ①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되었다면 일괄제공 조회 후 정해진 기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 자료가 필요하면 제시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③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4) 귀속년도와 근무월을 체크 및 확인합니다. 각 공제항목의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불러옵니다.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금액조회가 된 항목만 다운로드 됩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근무일이 있는 월을 체크하여 근무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습니다.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주세요!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100,000 원	90,909 원	9,090 원

2. 마법사 화면

연말정산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화면으로 공제사항이 간단한 경우 마법사만으로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완료하고 나면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하며, 필요시 다시 마법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화면에서는 마법사에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조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사용자가 쉽게 입력하게 하기 위해 단계별 이동방식과 단순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2.1 급여확인 및 안내

근로자 본인의 주소, 세대주여부, 지역건강보험, 지역국민연금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근무지의 2024 년 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의 급여정보(2024 년도의 현근무지 외의 근로소득)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 확인]

본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정보(국세청 신고정보)와 세대주,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최초 작업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마법사

급여확인 및 안내 > 국세청 파일 등록 > 부양가족 등록 > 공제정보 수기 등록 > 결과확인

고길동(A0001) ? 다음 >

1. 기초정보확인

* 세대주	세대주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영문명		영문주소		
연락처				
지역건강보험외	0	지역국민연금외	0	
거주자구분	거주자	거주지국	한국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국적	한국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	납세조합구분 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최초 동의 일시 : 2024.12.04 15:52:33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자세히 보기

[종전근무지 확인]

귀속년도내에 현근무지 급여 외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전
1. 1 종(전)근무지 확인
고길동(A0001) ?

2024년도에 현근무지 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적(근로소득 발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등록합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주(현) 근무지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2.2 국세청 파일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려 받은 PDF 파일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마법사

급여확인 및 안내 > 국세청 파일 등록 > 부양가족 등록 > 공제정보 수기 등록 > 결과확인

2. 국세청(PDF)파일 등록

고길동(A0001) ? 다음 >

근무월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월)

국세청 파일 상세설명 ※ 미근로 제외 월이 없습니다.
국세청 PDF파일의 전체월을 체크하여 자료를 받아 업로드해주세요.

국세청파일(PDF) 업로드가 안될 때 클릭!! 국세청파일(PDF) 선택

순번	파일명	종류	업로드 일시	
1	A0001.pdf	전체-기본내역	2024.01.15 10:18:42	상세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근무월에 맞춰서 전체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안내 참조)

전체파일 다운로드 후 필요에 따라 상세파일을 내려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체파일	귀속년도에 만근(종전근무 포함)을 한 근로자는 전체월이 선택된 상태로 내려받은 파일을 등록하고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중도입사자, 퇴직자)는 근무월을 선택하여 내려 받은 후에 업로드 한다.
상세파일	전체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만 적용한다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근로자의 전체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내려받은 PDF도 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다.

국세청파일(PDF)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창에서 해당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등록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상세 내역을 볼 수 있고 상세내역의 금액을 클릭하면 PDF의 내용이 보입니다.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체파일을 다시 추가하면 기존 파일을 모두 삭제 후 다시 업로드됩니다.

국세청파일 상세보기

국세청(PDF)파일 상세 닫기

성명	보험료	의료비	실손보험료	교육비 (유초중고·대학·기타)	교육비 (직업훈련비)	
고길동	3,204,690	5,887,400	114,090	9,700,000	1,941,450	
고부친		3,370,000				
홍장인		1,621,690				
장장모		1,407,600				
홍부인	1,722,730	4,408,730	32,370			
고영수		220,800	106,900	10,261,600		
고철수		729,300		208,780		
고둘리	489,872	263,800	1,077,048	3,647,360		

※ PDF파일에서 추출된 내역입니다. 공제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기본공제(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나이요건, 타인의 기본공제신청요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2.3 부양가족 등록

공제받을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공제 요건을 선택합니다.

급여확인 및 안내 > 국세청 파일 등록 > **부양가족 등록** > 공제정보 수기 등록 > 결과확인

< 이전
3.1 부양가족 등록
고길동(A0001) ? 다음 >

전년도 정보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국세청파일(PDF)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 추가	✓ 저장	○ 조회	
이름	내외국인	주민번호	관계	장애인	기본공제		경로자	자녀	출산/입양	특례신청	삭제
					기본 공제	요건					
고길동	내국인	750101-1234567	본인	☐	☒ 예 ☐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고부친	내국인	420101-1234567	본인(조)부모	2. 유공자	☒ 예 ☐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				삭제
고영수	내국인	000101-3234567	자녀및손자녀		☐ 예 ☒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삭제

[부양가족 등록하기]

전년도정보나 국세청 PDF 에서 부양가족을 아래와 같이 팝업을 띄워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할 때는 **기본공제 여부를 반드시 다시 체크**해줘야 합니다.

▼전년도 정보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전년도 부양가족 목록

☐ 고철수	050101-3234567	4 직계비속(자녀,입양자)	☒ 내국인 ☐ 외국인	3. 중증환자
☐ 고영수	000101-3234567	4 직계비속(자녀,입양자)	☒ 내국인 ☐ 외국인	

반영
취소

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목록 팝업. 체크한 후 반영한다.

▼국세청파일(PDF)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국세청파일(PDF) 부양가족 목록

☐ 장장모	620101-2234567	☒ 내국인 ☐ 외국인	
☐ 홍부인	810101-2234567	☒ 내국인 ☐ 외국인	
☐ 홍장인	600101-1234567	☒ 내국인 ☐ 외국인	장애인공제 ☒

반영
취소

국세청파일(PDF)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목록 팝업
 장애인정보가 있어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다.(장애인/유공자)
 국세청파일(PDF)에서 불러오기를 할 때에는 관계는 가져올 수 없으므로 반영 후 관계코드를 설정 해야 한다.

전년도 자료나 PDF 부양가족 정보가 없다면 추가버튼을 눌러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안은 저장이나 조회(저장하지 않은 작업취소)후에야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중 >>

저장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장**이나 **조회**를 눌러야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관리]

부양가족 목록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내외국인, 주민번호

수정할 수 없고 잘못 기입하면 삭제한 뒤 다시 입력한다.

관계

가족관계 선택

고철수의 관계 선택

1.본인 직계존속

☐ 본인 부모

☐ 본인 조부모

☐ 배우자 부모

☐ 배우자 조부모

☐ 배우자

☒ 자녀,입양자, (외)(중)손자녀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코드4외)

☐ 형제자매

☐ 배우자 형제자매

☐ 수급자(1-6제외)

☐ 기타(수급자)

☐ 위탁아동

관계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기본공제 요건의 ‘예’ 항목이 비활성화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의 ‘아니요’를 클릭하여 기본공제 요건이 아닌 사유를 선택한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도 직계비속 코드 4 로 선택한다.(자녀세액공제 가능)

장애인

고철수의 장애인 선택

☐ 해당없음

☐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 중증환자(그 밖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간입력

☐ 영구

☒ 비영구

기간

2024/01

~

2024/12

확인

취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다. 기한이 있는 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경우 기간을 입력한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의 확인

기본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소득 : 당해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하여야 하고,

2. 부양 :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만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와 항목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교육비)를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여부가 체크되지 않은 경우(N)라도 실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안내: 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 기본공제를 신청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수

☒ 확인

확인

취소

◀기본공제 ‘예’ 선택시

기본요건에 대하여 확인하는 창이 나온다.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본공제를 신청한다.

▼기본공제 '아니요' 선택시 또는 요건의 아이콘을 클릭

기본공제 - NO :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아니요'이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고부친 기본공제 아닌 사유 선택

나이	☐ 예 ☐ 아니요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 예 ☐ 아니요	연간 100만원 이하 
본인부양	☒ 예 ☐ 아니요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음. 

위의 사유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

공제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기부금
PDF금액	0	0	0	0	0
신청금액	0	0	0	0	2,400,000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취업, 혼인으로 인한 특례신청시 위의 공제가능항목과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경로자

만 70 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자동 체크. 경로소득공제 대상.

자녀

8 세 이상 20 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코드 4)은 자동 체크. 자녀세액공제 대상.

출산/입양 

신생아의 출산/입양 항목 선택

☐ 해당없음 ☒ 출산 ☐ 입양

· 2024년 출생자가 아니면 입양만 선택이 가능.

· 2024년 출생자는 기본값 출산이며 입양으로 변경이 가능

선택

☐ 첫째(30만원) ☐ 둘째(50만원) ☒ 셋째 이상(70만원)

·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인

취소

출산

2024 년도에 출생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면 자동 팝업됨.

'출산'을 클릭하고 몇째 자녀인지 선택한다.

입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팝업을 띄워 입력

2024 년도에 입양신고 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라면 '입양'을 클릭하고 몇째 자녀인지 선택한다.

특례신청 

고영수의 특례항목 신청

건강보험 산정특례

☒ 신청 ☐ 해당없음

· 건강보험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의료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 특례신청

☐ 신청 ☒ 해당없음

· 본인의 부양가족이었으나 특정사유(혼인, 취업 등)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 발생 전까지 부양한 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특례대상자인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팝업을 띄워 입력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 본인, 장애자, 65세이상, 6 세 이상인 경우 보이지 않는다.

그밖의 대상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 신청하면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제 특례신청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특별공제특례에 해당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2.4 추가공제 확인

< 이전 3.2 추가공제 확인 고길동(A0001) ? 다음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수정
부녀자 공제	✖ 대상아님 : 여성만 가능 설명보기 ▼
한부모 공제	✔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손)자녀 있음 신청취소 설명보기 ▼
결혼공제	✖ 신청하지 않음(공제자격 없음) 재신청 설명보기 ▼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전년도와 동일 설명보기 ▼

세대주여부	세대주여부 수정. 기초정보 또는 주택공제 기본정보수정에서도 수정가능.
부녀자 한부모 결혼공제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 맞으면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상아님' 으로 표시된다. 공제신청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공제요건을 간단하게 확인한다. 신청을 하였더라도 부양가족이 수정되어 요건이 안 맞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신청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버튼은 '재신청'으로, 신청하면 버튼은 '신청취소'로 바뀐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한부모공제만 신청된다
부녀자 공제(50만원 소득공제)	○ 신청 : 배우자 있음 ○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있는 세대주 ● 신청하지 않음(공제자격 없음) 안내 :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이상이 없습니다. ☐ 확인 ◀ 부녀자공제 신청 여성, 종합소득금액 3 천만원이하 (총급여액 41,470,588 이하)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제(100만원 소득공제)	○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손)자녀 있음 ● 신청하지 않음(공제자격 없음) 안내 :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이상이 없습니다. ☐ 확인 ◀ 한부모공제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손) 자녀 있음
결혼 공제	결혼 세액 공제 ○ 신청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미신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결혼공제 신청 - 24 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음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최초에 PEG 연말정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년도 동일 또는 변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는 전년도 정보와 비교하여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비교해 추가되지 않고 줄어있는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 으로 표시된다.

2.5 국세청 파일 반영

등록된 국세청(PDF)파일과 부양가족 정보를 매칭하여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 반영합니다.(저장)

체크표시된 항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기로 입력한 자료는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PDF 에서 제공한 항목만 보입니다.

← 이전
3.2 국세청(PDF)파일 반영

김길동(PEG11)
?
다음 >

전체선택
선택해제
공제반영

이름	관계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비고
김길동(750101)	0 본인	✓	3,896,317 ✓	0	19,536,666 ✓	63,001,059 ✓	160,000 ✓	
부양가족 공제항목 김부진(750101)	0 본인	✓	0	146,400 ✓	0	0	0	
김부진(420101)	1 소득자직계존속(부모)	✓	0	0	0	3,628,621 ✓	170,000 ✓	
홍장인(600101)	2 배우자직계존속(부모)		0	0	0	4,911,640 ✓	0	나이요건

의료비, 신용카드 이월비와 신용카드를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합계	의료비	5,535,400	신용카드	95,719,726	· 의료비 공제금액 :	2,430,400
최저사용	총급여 3%	3,105,000	총급여 25%	25,875,000	· 신용카드 공제금액 :	63,844,726

• 본인 공제항목

개인이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신탁(2022)	벤처투자신탁(2023)
0	0	0	0	0	0	0

• 주택 공제항목

▶ 연말현재 기본정보 :

세대주
무주택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구분	금액	신청	설문결과	사유
주택공제 주택마련저축	3,000,000 ☐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
주택임차자금	47,125,941 ✓	신청완료 신청취소	공제가능	설문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42,628 ☐	해당없음		주택임차자금 신청

※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설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싶지 않으면 금액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버튼	전체선택 : 공제가능 항목을 모두 선택. 전체해제 : 공제가능 항목의 선택을 모두 해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선택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항목	부양가족 요건(기본공제,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공제특례대상 등)에 맞는 공제항목 선택가능
의료비, 신용카드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최저사용금액과 공제가능한 금액, 안내
본인 공제항목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제여부를 선택
주택관련 공제항목	주택관련 공제는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에 공제가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주택자금 입력 참조) 신청하는 경우 주택관련공제신청 기본정보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를 먼저 입력한 후, 자격요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마련 저축 : 총급여 7 천만원이하, 세대주만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자만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 주택자만 가능(분양권 제외) ▶ 월세 : 총급여 8 천만원이하, 무주택자만 가능

2.6 공제정보 수기등록

입력해야 할 수기자료가 있을 때 마법사에서 간단히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화면입니다.

주로 입력하는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투자조합출자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외에 다른 항목이 있는 경우는 마법사 종료 후 사용자 화면에서 별도로 등록합니다

국세청금액은 국세청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고 국세청파일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가지고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는 기타금액으로 값을 넣어야 합니다.(대체로 국세청 금액 입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국세청 ☒ 기타(국세청 외)	기타(국세청 외) 금액	
----	--	--------------	--

월세액을 추가하는 경우는 주택공제기본정보와 설문을 입력하고 통과하여야만 공제항목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용자화면의 주택자금 설명 참조)

마법사에서 등록한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은 이후 사용자화면에서 동일하게 입력, 수정 가능합니다.

2.7 결과확인

입력된 급여정보, 공제정보 그리고 부양가족정보로 계산된 결과를 간단히 안내하고 확인이 체크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 화면의 입력 또는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 사용자 화면

3.1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	국세청파일 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기타
총(전) 1건	1건	6건		19건	17건	19건	37건	전체5건, 이월3건	5건	6건

근로자 본인의 2024 년 기초정보와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기초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종전근무지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

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 추가정보

수정

이름	고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영문명		영문주소			
세대주여부	세대주	지역건강보험외	0	지역국민연금외	0

국세청 신고정보

거주자 구분	거주자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국적코드	한국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부
--------	-----	---------	-----	------	----	-----------	---

소득정보

총(전)근무지 추가

구분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보험납입액	기납부세액	
주(현)	113-81-98060	주)피이지시스템	2024.01.01	2024.12.31	87,000,000	1,200,000	7,450,000	10,560,000	상세
총(전)	113-81-98060	(주)마이크로	2024.01.01	2024.02.29	5,400,000	0	919,000	178,200	수정 삭제

주(현)근무지(주)피이지시스템 상세정보

주(현)근무지 정보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근무기간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감면기간	.. ~ ..		
✓ 과세급여	급여총액	87,000,000				
✓ 비과세급여	비과세소득	1,200,000				
✓ 보험납입액	국민연금	3,500,000	건강보험	3,300,000	고용보험	650,000
✓ 기납부세액	기납부 소득세	9,600,000	기납부 지방소득세	960,000		

기초정보	▶ 수정 : 기초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 세액감면/외국납부세액추가정보 : 세액감면과 외국납부세액 관련된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국세청신고정보	국세청신고에 적용되는 본인정보를 확인한다
소득정보	현근무지의 소득(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의 급여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상세정보	소득정보에서 선택된 회사의 소득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3.2 국세청파일 업로드/부양가족등록/국세청파일반영 (마법사화면과 동일)

기초정보	국세청파일 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기타
총(전) 0건	1건	6건		17건	26건	18건	88건	전체20건, 이월0건	20건	9건
기초정보	국세청파일 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기타
총(전) 0건	1건	6건		17건	26건	18건	88건	전체20건, 이월0건	20건	9건
기초정보	국세청파일 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기타
총(전) 0건	1건	5건		13건	11건	12건	44건	전체8건, 이월0건	3건	9건

3.3 공제정보 등록

기초정보 총(전) 0건	국세청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5건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13건	의료비 11건	교육비 12건	신용카드 44건	기부금 전체8건, 이월0건	주택자금 3건	연금/기타 9건
-----------------	--------------------	--------------	-------------	------------	------------	------------	-------------	-------------------	------------	-------------

[보험료]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면 등록된 보험료 공제항목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보험료							추가
PDF	계약자1	피보험자	보험구분	국세청	기타		
PDF	고길동(750101)	김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143,000		수정 삭제	
PDF	고길동(750101)	김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00,000		수정 삭제	
PDF	고길동(750101)	홍부인(810101)	보장성보험	350,067		수정 삭제	

추가버튼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및 추가/수정합니다.

[의료비]

의료비 공제항목의 부양가족별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추가입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집계								
			난임,미숙아 입력 안내	실손보험금 안내	최저사용금액(총급여 3%) : 2,772,000		저장	의료비 공제정보 ?
성명	국세청 의료비	기타 의료비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기타 실손의료보험금 입력 ?	공제제외금액(이관) ?	공제제외금액	실손차감금액	공제대상금액 ?
고길동(750101)	698,700							698,700
고부친(420101)								0
고영수(000101)	2,451,000	500,000						2,951,000
신생아(240101)								0
합계	3,149,700	500,000	0	0	0	0	0	3,649,700
• 의료비								의료비 추가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추가
PDF	성명	항목코드	의료증빙코드	사업자번호	상호	국세청금액	기타금액	공제대상금액
	고길동(750101)	본인/65세이상자	국세청	999-99-99999	*****	698,700		698,700
								수정 삭제

▶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국세청자료로 집계된 실손의료보험금의 부양가족별 총계가 표기됩니다. 수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기타실손의료보험금 입력

실손의료보험금 중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수기로 입력하여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합계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큰 경우

당해연도의 의료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의 항목의 수정을 클릭하여 실손 차감금액을 입력합니다. 의료비합계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크면 공제대상금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입력

해당 의료비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고 의료기관 합계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난임 미숙아 입력안내를 참조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입력하고 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부양가족별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공제제외 금액		신용카드 집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23,100,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성명	국세청	기타	공제제외금액 (이관)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소비증가분			
						2023년 사용분	2024년 사용분		
고길동(750101)	27,560,000	5,840,000	500,000		32,900,000	16,870,000	32,900,000		↑
고철수(050101)	8,500,000				8,500,000	2,480,000	8,500,000		
고둘리(170101)									
합계	36,060,000	5,840,000	500,000	0	41,400,000	19,350,000	41,400,000		↓
• 신용카드									
PDF	성명	신용카드 구분	항목코드	국세청 금액	기타 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추가
	고길동(750101)	신용카드	일반	27,560,000			27,560,000	수정 삭제	↑
	고길동(750101)	직불카드	전통시장		5,840,000		5,840,000	수정 삭제	

• 공제제외금액 - 신용카드 공제에서 일괄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이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공제제외 금액		신용카드 집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23,100,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수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	전통시장사용액	제로페이	대중교통사용액			
500,000	0	0	0	0	0	0			0

• 신용카드집계 - 공제신청 내용을 구분별로 집계하여 조회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공제제외 금액

신용카드 집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23,100,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개인별 집계

성명	구분	일반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023년 사용분	2024년 사용분
고길동	신용카드	27,560,000	0	0	0	16,870,000	27,560,000
	직불카드	0	0	0	5,840,000		5,840,000
고철수	현금영수증	8,500,000	0	0	0	2,480,000	8,500,000

전체 집계

구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023년 사용분	2024년 사용분
집계금액	27,560,000	8,500,000	0	0	0	5,840,000	0	41,900,000
공제제외금액	500,000	0	0	0	0	0	0	500,000
공제신청금액	27,060,000	0	0	0	0	5,840,000	0	41,400,000

최소 사용금액 : 나의 총급여 25% (23,100,000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금액은 계산 시 신용카드 등에 반영됩니다.

[기부금]

등록된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의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각각 추가입력이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기부금

기부금 집계

기부금 공제정보 ?

구분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지정	일반	합계
당해년도	100,000				2,400,000		2,500,000
이월기부금					250,000		250,000
합계	100,000	0	0	0	2,650,000	0	2,750,000

기부금

추가

PDF	성명	항목코드	사업자번호	성호	기부내용	국세청 금액	기타 금액	
	고길동(750101)	정치자금기부금	999-99-99999	*****	금전		100,000	수정 삭제
	고부친(420101)	종교단체일반기부금	113-81-98060	적법종교단체	금전		2,400,000	수정 삭제

• 이월기부금 - 전년도 자료에서 이월된 자료를 보여줍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Y' 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집계

기부금 공제정보 ?

구분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지정	일반	합계
당해년도	100,000				2,400,000		2,500,000
이월기부금					250,000		250,000
합계	100,000	0	0	0	2,650,000	0	2,750,000

기부금

추가

구분	기부년도	항목코드	기부금액	이월된 금액	확인	
신규	2023	종교단체일반기부금	7,000,000	250,000	Y	수정 삭제

[주택자금]

국세청 PDF 반영에서 주택설문을 하고 넘어왔다면 설문결과와 등록된 공제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PDF 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마법사에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입력합니다.

주택 공제항목

연말현재 기본정보 : 세대주 무주택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주택자금 공제정보 ?

구분	건수	금액	신청	설문결과	사유
주택마련저축	3건	3,000,000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가능
주택임차자금	5건	49,525,941	신청완료 신청취소	공제가능	설문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건	442,628	해당없음		주택임차자금 신청
월세	0건	0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가능

주택마련저축

설문결과와 공제가능한 자료만 보입니다.

PDF	성명	가입일자	공제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국세청	기타
-----	----	------	------	------	------	-----	----

① 주택공제 기본정보수정을 눌러 연말현재 세대주여부와 소유한 주택수를 입력해줍니다.

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창을 띄워 설문을 작성합니다.

③ 설문결과 공제가능으로 나왔다면 PDF 로 등록된 자료가 공제신청 됩니다.

PDF 로 등록된 자료가 없으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청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주택공제 기본정보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 수정시 주택관련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취소

확인

연말현재 세대주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해당없음(재외국민/외국인)		
연말현재 주택소유(세대기준)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 주택공제 조건 설명

구분	선택값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비고
	총급여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공제불가: 92,400,000원)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공제불가: 92,400,000원)	
세대주	세대주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세대원	불가능	조건적 가능	조건적 가능	조건적 가능	주1
	그 외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택 소유	무주택	가능	가능	불가능(예외)	가능	주2
	1주택	불가능(예외)	불가능	가능	불가능	주3
	2주택 이상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예외)	불가능	주4

주1 조건적 가능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2 예외 : 분양권인 경우 세대주에 한해 가능

주3 예외 : 2009년 이전 가입 청약만 가능

주4 예외 : 2주택이상인 경우 2주택 모두 2005년 이전 보유인 경우 현 거주주택에 한해 가능(관리자 확인 후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소유여부는 연말현재 외에 연중과 취득당시의 요건도 맞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에서 체크합니다.

▼ 외국인의 주택자금 공제 신청

주택공제 기본정보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 수정시 주택관련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취소

확인

외국인 주택공제구분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	☐ 해당없음		
연말현재 주택소유(세대기준)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하는 주택공제구분을 선택합니다.

▼ 설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대환)하기

기초 설문	세대주 / 1주택															
종류 선택	☐ 일반(최초차입후 갈아타지 않음)	1주택 선택 가능														
	☒ 전환 또는 대환	1주택 선택 가능														
	☐ 분양권	무주택, 세대주 선택 가능														
	☐ 15년이상 상환후 연도중 매각	무주택 선택 가능														
	☐ 15년이상 상환후 연도중 매각건과 이후 신규취득(2건 공제)	1주택 선택 가능														
최초차입 년도	2015.01.01 (주) 국민은행	2015 년도														
전환 또는 대환의 종류																
전환, 대환시 공제대상액 확인 전환 또는 대환 할 때 최초 차입금의 잔액보다 증액하였고, PDF의 공제금액이 원금잔액 비율 원금 잔액 : ☐ 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최초차입금의 원금잔액을 입력합니다. 샘플화면 확인 ☒ 전환 또는 대환 할 때 최초 차입금의 잔액 그대로 대출한 경우 PDF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샘플화면 확인 전환 또는 대환 할 때 최초 차입금의 잔액보다 증액하였으나, PDF에 공제금액이 원금잔액 비율대로 제공되는 경우 PDF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샘플화면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취급기관</th> <th>대출종류</th> <th>최초차입일</th> <th>저당권설정일</th> <th>연간합계액</th> <th>소득공제대상액</th> <th>대출상태</th> </tr> </thead> <tbody> <tr> <td>(주) 국민은행</td> <td></td> <td>2015/01/01</td> <td>2017/01/01</td> <td>5,000,000</td> <td>5,000,000</td> <td></td> </tr> </tbody> </table> 확인 닫기			취급기관	대출종류	최초차입일	저당권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대상액	대출상태	(주) 국민은행		2015/01/01	2017/01/01	5,000,000	5,000,000	
취급기관	대출종류	최초차입일	저당권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대상액	대출상태										
(주) 국민은행		2015/01/01	2017/01/01	5,000,000	5,000,000											

기초설문을 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설문이 생성됩니다. 설문을 통과하여 공제가능이 나오면 확인을 체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설문의 경우 업로드된 PDF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정보가 전년도 똑같다면(건수, 계좌 체크)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 후 증도에 전환이나 대환을 한 경우 증액여부에 따라 조금 복잡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① 증액하여 원금잔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수정으로 들어가 계산버튼 클릭하면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 계산.
- ② 원금잔액 그대로 대출한 경우-PDF 공제금액 그대로 공제됨.
- ③ 증액하였으나 PDF 공제금액이 원금잔액비율에 따라 계산되어 제공되는 경우-PDF 공제금액 그대로 공제됨

▼ 월세등록하기

* 성명	고길동(750101) O	* 항목코드	월세액
* 임대인주민(사업자)번호		* 임대인성명(상호)	집주인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서울 중구 수표로4길 27		
* 계약시작일	2024/04/10	* 계약종료일	2025/04/09
* 거주시작일(전입일)	2024/04/10	* 거주종료일	2025/04/09
* 주택유형	아파트	* 주택면적(m ²)	55
* 계약기간 총 월세지출액	6,600,000	금액입력	PDF 지급액
공제신청 계산금액	4,809,863	계산상세	공제신청 금액
			4,809,863

* 주의: 계약기간 총 월세지출액은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지출해야 할 총 월세액입니다. 월세가 100만원, 계약기간이 24개월이면 2,400만원 입니다.

월세설문을 통과하고 월세를 추가하여 월세정보를 입력합니다

PDF 로 월세를 업로드 한 경우 계약기간, 거주기간, 근무기간 등이 귀속년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월세지출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PDF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기간 총월세지출액 금액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총월세지출액이 계산됩니다. 적용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총월세지출액 입력			
		적용	단기
계약기간	2024/04/10 ~ 2025/04/09		계약기간 수정은 화면을 닫은 후에 등록창에서 합니다.
계약개월	12 개월 0 일		
월세금액	550,000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금액(한달 치)만 넣습니다.
계약기간 총 월세지출액	계산	6,600,000	계약개월 * 월세금액
	적용	6,600,000	최종 적용할 금액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② 총월세지출액이 입력되면 계산금액과 공제신청금액이 보여지고 계산상세를 클릭하면 상세계산내역과 예상세액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내 임차일수(계약기간과 실거주기간내의 귀속년도에 근무한 일수) 구하기			
① 계약일수	365일	계약기간	2024/04/10 ~ 2025/04/09
② 계약기간 내 거주일수	334일	거주기간	2024/04/10 ~ 2025/03/09
③ 과세기간 내 임차일수	266일	2024근무기간 (전근무지 포함)	주/파이자시스템 2024/01/01 ~ 2024/12/31
계산금액 (공제대상금액) 구하기			
③ 계약기간 총 월세지출액		6,600,000 원	
$\text{계산금액} = \frac{\text{③ 계약기간 총 월세지출액}}{\text{① 계약일수}} \times \text{③ 과세기간 내 임차일수}$ $= \frac{6,600,000 \text{ 원}}{365} \times 266 = 4,809,863 \text{ 원}$			
예상세액공제금액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15%		721,479 원	

- ③ 공제신청금액은 계산금액과 동일하게 세팅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금/기타]

연금/기타에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주택자금 외 나머지 공제항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아닌 근로자 본인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코드에서 추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맞는 입력항목이 나타납니다.

상세내용			
* 설명	고길동(750101) O	* 항목코드	투자조합출자
* 투자구분		* 투자일자	
* 금융회사		* 계좌번호 (또는 증명서발급번호)	
* 수기입력은 국세청금액과 기타금액 중 하나만 입력이 가능하며 국세청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것입니다.			
구분	☐ 국세청 ☒ 기타(국세청 외)	기타(국세청 외) 금액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학기술인공제(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금계좌)

연금저축(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3.4 공제정보 확인 및 제출

신청한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계산결과를 확인한 후 확인완료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계산된 결과 값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 해당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최종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길동님의 총급여액은 97,000,000 원이고 기납부세액은 8,426,000 원입니다. 추정액 결정세액은 0 원이고 총 환급 금액은 -8,426,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금종류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합
소득세	0	7,660,000	-7,660,000	
지방소득세(소득세 10%)	0	766,000	-766,000	-8,426,000

※ 국세청 모의계산과 비교시, 원단위 절사로 인한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Summary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합	그밖의 소득공제 합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97,000,000	14,600,000	22,610,000	5,863,621	53,926,379	7,722,330

세액공제계산내역

구분	항목명	신청인원 (건수)	신청금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비고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감면 (90%)		12,000,000	0	859,805	
	세액감면계		12,000,000	0	859,805	
세액공제(그 외)	근로소득세액공제		0	0	444,329	
	자녀	1	150,000	0	150,000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금계좌)		4,750,000	4,750,000	570,000	5,500만초과 12%
	연금저축(연금계좌)		4,380,000	395,008	47,401	한도초과(종합 7,000,000)(잔액 수납)
특별세액공제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1,676,207	0	0	세액공제 잔액 0
	보장성보험료		2,965,420	1,000,000	120,000	한도초과
	의료비		13,545,520	10,287,160	1,543,074	
	교육비		24,632,085	24,632,085	3,694,812	
	정치자금기부금		1,000	1,000	909	
	기부금(법정,우리,지정)		1,460,000	1,460,000	292,000	
특별세액공제계	특별세액공제계		0	0	5,650,795	
세액공제계	세액공제계		0	0	6,862,525	
결정세액	결정세액		0	0	0	
산출세액		세액감면 합		세액공제 합		결정세액
7,722,330		859,805		6,862,525		0

급여정보와 공제신청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정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 (-) 버튼을 누르면 계산상세과정을 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표준세액공제 항목 옆의 돋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상세 계산 창이 열립니다.

[상세내역확인 - 교육비]

교육비

• 교육비

대상자	교육비 종류	신청금액 합계	개인별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 금액	비고
고영수(000101)	대학교교육비	6,821,600	9,000,000	6,821,600	1,023,240	
고영수(000101)	장애인특수교육비	3,440,000	한도없음	3,440,000	516,000	한도는 이전 교육비 포함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708,780	3,000,000	708,780	106,317	
고길동(750101)	본인교육비	13,661,705	한도없음	13,661,705	2,049,255	
세액공제 합계금액					3,694,812	

• 신청금액 상세

대상자	교육비 종류	구분	신청금액	항목별한도	신청가능금액	신청금액 합계	비고
고영수(000101)	대학교교육비	일반	6,821,600		6,821,600	6,821,600	
고영수(000101)	장애인특수교육비	일반	3,440,000		3,440,000	3,440,000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교복	659,000	500,000	500,000	708,780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일반	55,300		55,300	55,300	

닫기

닫기

[적용결과보기]

적용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한 공제정보 중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결과 상세리스트			
종류	항목	성명	내용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김영수	해당없음14(무주택/세대원은 공제 불가)
제외	신용카드	고철수	소득100만원 초과자

제외 : 신청한 공제가 계산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 : 데이터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안내 : 계산내역 중 특이사항

오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오류사항

[공제내역확인]

총 급여정보와 신청된 공제정보의 집계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총급여	97,000,000	근로소득금액	82,400,000	기납부세액	8,426,000			
• 인적공제/연금보험								
소득공제	신청건수	신청금액	세액공제	신청건수	신청금액	연금/보험	소득공제금액	
기본공제	5	7,500,000	자녀	1	150,000	공적연금	5,730,000	
추가공제	2	4,000,000	출산입양	0	0	사회보험	5,380,000	
• 공제신청								
이름	관계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비고
고길동(750101)	0 본인	✓	1,242,690	5,773,310	13,661,705	24,063,331	51,000	
고부친(420101)	1 소득자직계존속(부모)			3,620,000				소득100만원 초과자장예인
호장인(000101)	2 배우자직계존속(부모)	✓		1,624,000		5,177,040	210,000	장예인
• 본인공제항목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조합			
6,060,000	5,466,680	5,339,527	7,500,000	6,000,000	118,698			
• 주택관련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0	0	6,770,512	0					

[제출서류첨부]

공제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로 설정한 회사인 경우 제출서류 첨부 탭이 보입니다.

본인이 공제 신청한 항목에 필요한 증명서류들이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각 증빙 서류의 사진이나 문서를 준비하여 파일첨부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보험납입증명서, 교육비납부증명서 등

공제항목	첨부서류명	발급처	상세구분	비고	업로드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정부24,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207780001234		파일첨부(0)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	207780001234		파일첨부(0)

제출서류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크기는 5MB 이하여야 합니다.

파일갯수 : 0건

닫기

[확인완료 버튼]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으면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출전확인사항

■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등록된 부양가족 : 8 명
 기본공제자 : 6 명 경로우대자 : 1 명
 장애인 : 0 명
 출산입양 : (첫째 : 0 명) (둘째 : 0 명) (셋째이상 : 0 명)
 자녀 수 : 3 명
 부녀자 여부 : 공제신청가능
 한부모 여부 : 공제신청가능

■ 주택관련공제
 주택관련 정보는 [세대주 / 계속근로] 입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택임차자임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허위나 과실, 착오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했습니다.**

다음

닫기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두번째 팝업창으로 넘어옵니다.

증빙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로 설정된 회사인 경우 본인이 공제 신청한 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보여집니다.

'본인' 란에 'O' 표시된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준비한 서류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출력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분납신청은 추정세액이 회사가 설정한 조건값을 초과한 경우만 가능하며 분납신청과 차년도 소득세율 선택은 회사에 따라서 선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여기서 사인창이 나타나 사인하고 저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확인완료 버튼은 확인완료취소 버튼으로 바뀝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국세청	본인	비고
주택자금	주인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O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O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O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출, 차환, 연장시)	금융회사 등		O	
기부금	기부금영세서	본인 작성		O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O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O	

'시스템제공'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서류입니다.

※ 국세청에 O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되며 작년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 해당에 O 표시된 항목은 소득공제 신청이 된 항목입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분납신청
 ☐ 신청
 ☒ 미신청
 |
 차년도 소득세율
 ☐ 80%
 ☒ 100%
 ☐ 120%
 (금년도 : 100%)

확인

닫기

